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6월 1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6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6월 28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채 동 익

나. 제안(폐지)이유

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』는 공업단지 조성을
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『지방공업개발법』에 근거하여,
1989년 5월 구미시 조례를 제정·시행하여 왔으나,
『지방공업개발법』이 폐지(1990. 1. 13)되고,

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『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』과
『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→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
관한법률(2002. 12. 30.개정)』이 새로 제정 시행되어 산업단지를
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,

또한, 세부적인 사항은 『산업단지 관리지침』 등으로 구체적으로
규정되어 있어, 불필요한 현행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
에관한조례(제0071호 1995. 01. 01)』를 폐지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, 제7조
 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, 제 3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』는
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『지방공업개발법』에
근거하여, 1989년 5월 구미시 조례를 제정·시행하여 왔으나,
『지방공업개발법』이 폐지(1990. 1. 13)되고,
- 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『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』과
『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2002. 12. 30.개정)』이
새로 제정 시행되어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,
- 또한, 세부적인 사항은 『산업단지 관리지침』 등으로 구체적으로
규정되어 있어, 불필요한 현행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
에관한조례(제0071호 1995. 01. 01)』를 폐지코자 함.
- 조례안 폐지가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
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